
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-5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5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, 마포소방서 요청사항 및 소관사항, 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근거 법령 변경(안 제1조)
- 나.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정의 추가 등(안 제2조제1호)
- 다. 소방시설설치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변경(안 제9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5. 4. 17. ~ 5. 7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”를 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다목 중 “「노인복지법」”을 “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”로 하고, 같은 호 **마목 및 바목**을 각각 **바목 및 사목**으로 하며, 같은 호에 **마목**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“위원회 . . .)”를 “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어르신동행과장·장애인복지과장·가족정책과장**”을 “**실뿌리복지과장·어르신동행과장·장애인복지과장·가족정책과장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**재난관리과장**”을 “**예방과장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**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장**”을 “**마포서부재가노인복지기관장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**소방에 관련한**”을 “**소방 및 화재 관련**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화재예 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가.~나. (생략) 다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라. (생략) <신설> 마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바.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</p> <p>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현행과 같음) 가.~나. (현행과 같음) 다.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----- -----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. (현행 바목과 같음) 사. (현행 바목과 같음)</p> <p>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-- -----</p>

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설치지원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, 당연직 위원은 어르신동행과장·장애인복지과장·가족정책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장
2.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장
3. (생략)
4. 소방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
5. (생략)

-----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-
--.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실뿌리복지과장·어르신동행과장·장애인복지과장·가족정책과장-----

--.

1. ----- 예방과장
2. 마포서부재가노인복지기관장
3. (현행과 같음)
4. 소방 및 화재 관련 -----
5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- 2025년 기준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예산 편성액은 31,460천원(구비 8,000천원, 시비 27,160천원)임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구민안전과 박영조
연 락 처	02-3153-9463